

# 강사료 지급 규정

개정 2018.03.22. 개정 2019.04.17. 개정 2019.09.16. 개정 2022.06.27.

## 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혜전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전임교원, 겸임교원 및 강사의 강의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1.8.1., 2019.04.17.>

## 제2조 (강의구분과 정의)

본교의 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실험, 실습 실기 및 임상실습 등의 지도와 시범을 특수 강의라 한다.
- ② 전호 이외의 평상 수업을 보통 강의라 한다.
- ③ 국내외의 저명인사 및 명예 교수에 의한 수업을 특별강의라 한다.
- ④ 책임시간 이외의 수업을 초과 강의라 한다.
- ⑤ 전임 이외의 교원이 시간제로 담당하는 수업을 시간강의라 한다.

## 제3조 (강의 책임시간)

전임 교원의 주당 책임 시간은 12시간으로 한다.

## 제4조 (강사료의 지급)

본교의 강의 중 초과 강의와 시간 강의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하여 각각 강사료를 지급한다. 단, 초과 강의는 주당 책임시간을 초과하는 강의 시간에 한하여 강사료를 지급한다.<개정 2011.8.1.>

- ① 초과 강사료는 초과 강의한 교원에게 실제 강의한 시간 수에 의하여 지급한다.<개정 2011.8.1.>
- ② 시간 강사료는 총장의 위촉에 따라 시간 강의를 담당한 자에게 실지로 강의한 시간 수에 의하여 지급한다.

## 제5조 (강사료의 계산)

강사료는 주 단위로 시간을 계산하며 임상실습의 경우는 별도 계산할 수 있다.

제6조 (책임시간의 일부면제)

강의담당시수에 관한 규정 제 4조에 의한다.<전문개정 2009.3.1.>

- ① 삭제
- ② 삭제
- ③ 삭제
- ④ 삭제

제7조 (강의시간의 제한) <전문삭제 2015.2.24.>

제8조 (강사료 지급기준)

- ① 시간당 강사료의 기준 지급액은 매년도의 예산 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한다.
- ② 외국인 명예교수 및 국내 저명인의 시간 강사료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③ 강사 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강의를 하지 않았을 때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<개정2018.03.22.>
- ④ 전항의 1시간이라 함은 1교시를 말한다.

제9조 (강사료 기준의 특례)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 강의를 담당 하지 아니한 교원에게도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- ① 시험시간
- ② 기타 교내 또는 국가적 행사로 인하여 출강한때

제10조 (강사료의 지급일)

강사료는 특별 강사료를 제외하고는 당월분을 익월 5일에 지급하되 당해일이 공휴일 일 때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. 단, 겸임교원 중 연봉 지급자는 교직원 보수규정에 준용한다.<개정 2019.09.16., 2022.06.27.>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1983학년도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1984학년도부터 시행한다.

제3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1985학년도부터 시행한다.

제4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1986학년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제5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1987학년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제6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1988학년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제7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1989학년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제8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1991학년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제9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1991학년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제10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1992학년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제1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1992학년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제12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1993학년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제13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1993학년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제14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1994학년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제15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1995학년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제16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1996학년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제17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1997학년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제18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00학년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제19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02학년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0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02학년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09학년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2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1학년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5.02.24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5년 0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8.03.22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8년 03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04.17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04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09.16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09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2.06.27>

제1조 (시행일)

이 세칙은 2022년 06월 27일부터 시행한다.